

정책

Q & A

축산업 등록제

1. 도입배경 및 현황

가. 도입 필요성 및 추진방향

축산업의 규모화 및 밀집사육 증가에 따라 구제역·돈콜레라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이 늘고 분뇨집중발생 등으로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가경제 전반에 걱정과 손실을 끼치게 됨에 따라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필요

- 종전의 규모화·생산중대 위주의 축산에서 환경과 조화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는 선진축산으로 변화해 나가야 함
- 선진축산으로 발전하기 위해 사양·방역 및 안전관리 등 축산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반구축이 필수적임
- 농장 위치, 약품·분뇨·사료차량 이동경로 등 방역관련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질병발생시 신속한 차단방역이 가능
- 안전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필요한 쇠고기 생산이력제도 소의 개체식별과 함께 사전 농장등록이 필수적임
- 앞으로 농업전반의 정책방향은 DDA·FTA협상 등에 따라 친환경축산직불제와 같은 직접지불제 위주로 추진 전망
- 올해부터 시범추진중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서도 농가별 분뇨처리경로, 가축사육밀도 준수, 환경교육 이수여부 등 지급조건에 지속적 점검·관리가 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축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가 미비하여 선진제도의 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지금과 같이 농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농가에게 제대로 된 혜택을 드리기가 어려움
- 축산업등록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축산업의 선진화를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제도로써 역할을 기대
 - 세계 각국도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부담 증가, 구제역·광우병 등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친환경 축산을 위한 기반강화 추세
- 네덜란드는 농가별 분뇨발생 허용량 제한, 벨기에는 농가별 사육두수 상한제정, 프랑스는 대규모 농장허가제 운영
한편 관련 규정 정비 과정에서 농가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였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등록시 부담이 큰 것으로 잘못 인식
- 가축사육업의 경우 별도의 시설·장비기준 없이 축사면적, 사육두수 등을 현재상태 그대로 등록하면 되므로 농가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음
- “가축사육시설” 개념을 채택, 무허가 축사농가도 등록가능
 - 무허가축사는 현재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실태 파악이 가능하며, 농가의 생계영위시설이기 때문에 단속을 자제하는 것이므로 축산업등록으로 인해 단속이 강화되는 것은 아님
- 현재도 배합사료구매 및 납유실적 등을 통해 과세자료 파악이 가능하며 등록제 시행으로 세원노출이 증가되는 것은 아님
 - 지금은 소비자와 국민의 인식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등록제 정착 등 축산업계가 자율적인 체질개선 노력을 통해 선진축산을 지향한다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 줄 필요가 절실함
- 축산물의 안전성이나 환경오염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소비가 대폭 감소하는 등 축산업의 존립자체가 어려워짐
 - 앞으로 축산정책은 원칙적으로 등록농가를 중심으로 추진계획
 - 축산업등록제가 농가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기존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람직함

나. 농가 제기의견 반영사항

02.12.26 축산법을 개정하고(03.12.27 시행) 생산자단체, 지자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14회에 걸쳐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지침을 마련,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

제 기 의 건	반 영 내 용
① 낙농가의 경우 타 축종보다 등록대상농가가 많아 불공평	- 등록대상 농가범위를 당초 가축사육 시설면적 100㎡ 이상 농가에서 300㎡ 이상 농가로 축소
② 소독설비 및 분뇨처리시설 등 등록기준을 갖추기 어려움	- 등록시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준에서 소독설비 및 분뇨처리시설 제외
③ 등록제가 규제로서만 작용하지 않도록 인센티브도 함께 강구	- 등록농가가 친환경축산을 영위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축산직불제 도입 -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려 할 경우 소요비용 지원
④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후 등록실시 요망	- 기존 건축허가를 받은 축산농가 및 축산분야 이외의 무허가 건축물 등과 형평성 양성화는 어려우나, 가축사육시설 개념을 도입하여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등록 허용
⑤ 등록제 시행으로 무허가축사현황 등이 노출되어 등록농가의 불이익 우려	- 축산업 등록시 무허가축사와 적법축사를 구분하지 않도록 하여 무허가축사의 노출 정도가 등록제 시행 이전과 큰 차이가 없도록 함.
⑥ 축사의 건폐율 상향조정	- 건교부와 협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건폐율 상향조정 추진중(시군 조례개정) · 현행 건폐율 20%인 시(市)지역은 40%, 군(郡) 지역은 40~60%로 상향조정 권고 - 건폐율 상향조정으로 적법요건을 갖추게 되는 무허가 축사는 추진 추진
⑦ 07년부터 두당 적정 가축사육시설면적을 확보토록 의무화되어 있어 농가 부담 가중	- 동 기준은 축사표준설계도를 기초로 현지실태조사, 생산자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대부분 농가는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파악 · 필요시 실태조사, 생산자단체 협의 등을 거쳐 보완 실시
⑧ 축산업등록제의 영업정지 조치 등 독소조항 삭제	- 미등록 농가에 대한 제재(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추후 법 개정시 완화하는 방안 강구 - 등록명의를 대여시 영업정지 처분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보완 추진

▣ 주요내용

- 종축업, 부화업, 계란집하업 및 가축사육시설면적 소·닭·오리 300㎡, 돼지 50㎡초과 농가는 시장·군수에게 등록
- 축산업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농가정보 등을 체계적 관리
- 가축사육업은 05.12.26까지, 계란집하업은 04.6.26까지 등록
- 등록시 가축질병방역, 위생·안전성 강화 등을 위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함

구 분	
부화업	부화실과 병아리방을 설치,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 배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 부화장을 계사(鷄舍)와 격리
계란집하업	내구성 재료를 사용, 환기시설, 계란포장장비, 계란무게자동선별기, 계란운반장비
종축업	내구성 재료를 사용, 사육단계별 구분사육시설, 종돈사를 일반돈사와 구분 설치
가축사육업	통풍이 잘되거나 환기시설을 갖춘 가축사육시설

- 축산업등록 후 휴업·폐업·영업재개 및 영업승계와 아래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
- 변경신고사항 : 사업장 명칭, 대표자, 부화능력·가축사육시설면적 20% 이상 증가, 부화업 및 소사육업의 가축 종류, 백세미알 생산시
- 등록자는 개량, 방역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구 분

부화업 종축업 가축사육업	중계의 알과 양계업 등록농가가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한 알만 부화 중돈에 대하여 개체식별표시, 중돈등 판매시 중돈혈통증명서·번식용씨돼지혈통확인서 교부단위면적당 사육에 적절한 가축의 숫자 이상으로 밀집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야 함 (’07년 1월 1일 시행)가. 도입 필요성 및 추진방향
---------------------	--

2. 농가 관심 및 우려사항

가. 2010년까지 7년간 유예하여 농가에 준비기간 부여

- 농가가 유예를 주장하는 이유는 소독설비와 분뇨처리시설을 법규정에 맞도록 갖추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임
- 그러나 등록 시설·장비기준에서 소독설비 및 분뇨처리시설을 제외하여 별도 준비사항이 없으므로 연기할 필요가 없음
- 소독설비·분뇨처리시설 등의 확인없이 현재 상태로 등록
- 한편 '10년까지 등록제 시행유예 주장은 등록을 하지 말자는 것이며, 오히려 축산업의 선진화를 늦추게 됨
- 상수원보호구역 등 축사 건축제한지역내 무허가축사는 이전하지 않는 이상 '10년이 되어도 관련법규정에 맞출 수 없음
- 10년이 되면 또다시 등록기간 유예 주장 제기 가능성 상존

나. 무허가축사 양성화 조치후 등록실시 필요

- 현재 적법하게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가, 축사 이외의 무허가건축물(무허가 주택, 창고 등) 등과 형평성 고려시 양성화는 어려움
- '축사' 대신 '가축사육시설' 개념을 도입하여 축사의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현재상태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등록제 시행으로 무허가축사와 분뇨처리시설 미설치 현황 등이 노출되어 농가의 범법자화 및 축산업 포기 초래

- 축산업 등록시 가축사육시설중 무허가축사와 허가축사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으므로 무허가축사의 현황이 바로 드러나지는 않음
- 축사는 농가의 생계 영위시설이기 때문에 단속을 자제하는 것이며, 축산업등록으로 인해 단속이 강화되는 것은 아님
- 현재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무허가축사실태 파악이 가능하며 축산업등록을 앞섰다고 해서 무허가축사의 실태가 숨겨지는 것은 아님

라. 등록시 세원이 노출되므로 농가부담 증가

- 현재도 도축·출하실적, 사료거래실적 및 납유실적 등을 통해 과세자료를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으며
- 축산업등록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추가로 세원노출이 증가되는 것은 아님

라. 소의 경우 현행 등록제가 초지·조사료포 확보를 의무화하여 수도권지역의 낙농업 포기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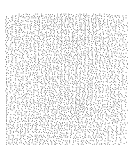
- 조사료확보의무를 부과하는 친환경축산직불금 사업과 혼동하여 발생한 오해
- 축산업 등록을 위해 초지나 조사료포를 확보할 필요는 없으며
- 가축사육농가는 현행의 사육시설과 사육두수를 현재 있는 그대로 신고하면 됨
- 조사료포 확보요구 면적은 농가가 축산업등록제와는 별도의 사업인 친환경축산직불제에 가입하여 보조금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이며 동 제도는 농가의 희망에 의해 참여하는 사업임
- ※ 친환경축산직불제 조사료포 확보 필요면적 기준 - 한육우 113평/두, 젖소 277평/두 이상

마. 2007년부터 두당 적정 가축사육시설면적을 확보토록 의무화되어 있어 농가 부담 가중 및 구조조정수단으로 변질우려

- 두당 사육시설면적은 농가가 많이 활용하는 축사표준설계도를 기초로 하여 현지실태조사, 생산자단체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하여 고시(04.3)한 것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
- '07년부터 시행계획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농가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실태조사·연구용역 실시 등 보완을 검토하되
- 농가불편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음

바. 축산업등록제의 영업정지 조치 등 독소조항 삭제

- 미등록 농가에 대한 제재(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추후 법개정시 완화 검토
- 가축사육업에 대한 영업정지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한하여 부과하며
- 적발시 바로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위반시에는 먼저 경고를 하고 2차 위반시부터 영업정지처분(2차 15일, 3차 30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 1차 적발시 자신의 명의로 축산업등록을 하면 농가의 부담이 없음
- 다만 가축사육농가의 경우 현실적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추후 법개정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사. 축사의 건폐율 상향조정

- 축사의 건폐율은 시·군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조례개정을 통해 해결할 사항이나
- 농가가 어려움을 감안하여 관련부처(건설교통부)와 함께 지자체가 축사의 건폐율을 높이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 추진방안(안)
-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폐율을 상향조정
- 현행 건폐율을 20%로 운영중인 시(市)지역은 40%수준, 군(郡) 지역은 40~60%로 상향조정
- 대상지역 : 보전·생산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 건폐율 완화로 적법요건을 갖추게 되는 무허가 축사는 추인 추진
- 축산업등록 시한('05.12.26)을 감안하여 '05년 상반기까지 건폐율 상향조정 및 추인조치 중점추진(시·군)

3. 외국의 축산업등록제

가. 유럽연합

- 축산업에 대한 정책적 규제는 먼저 환경보존을 위해 출발하여, 90년대 후반들어 광우병, 구제역 등의 발생에 따라 방역 및 안전성 관리강화 등을 위해 확대되어 옴
- 주요 규제사항은 농가 등록·허가 실시, 단위면적당 가축사육두수 및 축산분뇨발생량 제한, 가축의 출생·이동·판매 등에 대한 추적가능성 확보 및 처분제한 등임
- 돼지·닭의 경우 농가단위, 소는 개체까지 식별체계 구축

구 분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년 처음 개체식별제도 도입후 '70년대 농장별 고유번호와 모든 소에 고유번호 부여 후 '80년대 예방접종 등 등록내용 확대 - 농가별로 농경지면적, 가축두수, 가축의 품종 등 등록 실시 · 분뇨와 화학비료 등 모든 공급요소를 포함하여 미네랄 허용량 제한 · 미네랄 사용기준 초과농가에 대해 과징금 부과
벨기에 Special Sanitation System, SANIT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가축을 출생시에서 도축시까지 농장별, 개체별(소) 또는 집단별(돼지, 닭)로 전산등록 실시(SANITEL) · 가축분뇨·화학비료 사용량제한, 가족축산농 사육규모 상한 설정 · SANITEL 등록부, 진료기록, 처방전, 사료구입영수증과 사료검사성적서 등은 바인더에 편철, 농장에서 보관·관리 의무화 - SANITEL에 미등록시 출하, 이동(판매)이 불가능하고, 발견시 압수·폐기, 살처분 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육두수를 증가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환경자격증 취득

구 분

영 국 Cattle Identification & Regist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부터 모든 소사육농가에게 소의 출생, 이동, 도축사향 등을 기록·증명하는 PASSPORT 발급 · Passport가 없는 소는 이동·판매·도축 제한 - 슬러리, 사일로 및 연료저장시설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건축규격 적합의무 부과 등 규제 실시 - 농가별로 질소비료 살포기록부를 작성토록 하고 목초지 등 농경지면적에 따라 사육두수 규제 실시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이상 분뇨저장시설 설치 의무화 등 사실상 등록제 실시 · 축사시설을 신축하거나 확장시에는 허가 필요 - 농가별 축산분뇨살포 농경지 확보, 면적당 가축사육두수 제한, 농경지 면적당 가축분뇨 및 화학비료사용량 상한 설정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축산농장에 대해 허가제 실시 - 농가별 가축분뇨저장시설 설치, 가축분뇨생산기록부 보관 의무화

나. 대만 : 축목업 등기제

- '97.3월 구제역 발생 이후 축산사업장 등기 의무 부과('98.8)
- 농장책임자나 주요관리인은 수의·축산과를 졸업하거나, 정부주관 훈련과정 수료 또는 2년 이상의 현장 실무경험자이어야 함.
- 관련 법령규정의 제시기준에 부합되는 축분처리시설을 설치
- 전담수의사를 두거나, 수의사와 계약을 통해 위생관리를 책임
- 축목장 미등기, 변경사항 미등기 등의 경우에는 3만~9만원의 벌금 부과